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 <개정 2012.7.4>

물이용부담금 통보서(　　년　　월분)

관리번호:							
제출자	성　명	(생년월일　　)					
	주　소	(전화번호:　　)					
	사 업 장 명 칭						
	사업장소재지	(전화번호:　　)					
물이용 부담금 내역	물 사 용 량	ℓ	납부금액	원	사용기간	.　.　.부터	
						.　.　.까지	
	물 사 용 량 산 출 방 법						

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명세를 통보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제출자 :　　(서명 또는 인)

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

※ 참 고: 이 통보서는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른 수역에서 물을 취수하는 전용수도 설치자 및 하천수 사용자가 작성하며, 매월의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